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87 발의연월일: 2025. 2. 4.

발 의 자 : 윤준병 · 김현정 · 안태준

박희승 · 박홍배 · 김한규

김민석 · 정성호 · 박성준

진성준 · 문진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연 3,7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준은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을 넘어서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2009년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연 3,700만원으로 설정한 이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법률 제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 ①·② (생 략)	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			
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			
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			
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		
상인 <u>자</u> <후단 신설>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u>고시하는 금액자. 이</u>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여 고시하여		
	<u>야 한다.</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